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나2009615 판결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나20096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2가합50912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진동, 이찬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병문, 김강연

변론종결 2024. 9. 11.

판결선고 2024. 10.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2가합509125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9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23.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3.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5.부터,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100,188,083원 및 그중 65,306,164원에 대하여는 2023. 9. 2.부터, 나머지 34,881,919원에 대하여는 2024. 8. 27.부터 각 2024.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900,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1,800,000,000원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23.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3.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5.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부터,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부터 각 2022. 2. 25.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491,779,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900,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900,000,000원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23.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3.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5.부터,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100,188,083원 및 그중 65,306,164원에 대하여는 2023. 9. 2.부터, 나머지 34,881,919원에 대하여는 2024. 8.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주위적 청구와 비교하여 위 ②, ③ 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은 감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의 종기를 연장하여 구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예비적 청구를 제1 예비적 청구로 기재하면서, 제2 예비적 청구로 그중 ① 부분과 ③ 부분은 제1 예비적 청구의 각 해당 부분과 동일하나 ②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371,178,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제2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여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LGP”를 “LPG”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아래에서 제6행의 “300만 원을”을 “300만 원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2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행을 바꾸어 “(1)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 목차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6면 아래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한 터널식 세차기 2대를 운영하게 할 의무 및 이 사건 LPG 충전소에 설치된 세차기 2대의 철거의무는 늦어도 그 이행기가 2020. 9. 30.경에는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때까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21.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세차기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운영인 변경신고를 요청하였고 2021.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각종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21. 10. 21. 피고에게 재차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및 그럼에도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임대차계약 및 2020. 4. 23.자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그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여전히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는 위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 제26면 마지막행 “이행거절을”을 “이행거절 및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6, 27면의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임대차계약 및 2020. 4. 23.자 합의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9면 제13행 “없다.” 다음에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전기충전시설과 세차기를 설치함으로써 어떠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2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계약 해지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의 전보배상 외에 지연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별도의 특약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가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피고의 각 지위,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임대차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게 된 이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입었을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감액하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36면 제7행부터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가 초과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3,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주유소의 세차기 및 주유기 수리비용으로 100,243,908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월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53,048,08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36면 제12행의 “18,166,164원”을 “53,048,083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6면 아래에서 제2행의 “원고가 구하는 2022. 2. 25.까지”를 “다 갚는 날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6면 마지막행의 “65,306,164원”을 “100,188,083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7면 제2행의 “18,166,164원”을 “53,048,083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7면 제3 내지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중 65,306,16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3. 9. 2.부터, 나머지 34,881,91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4. 8. 22.자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4. 8. 2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37면 제8행부터 제10행을 삭제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및 추가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 박형준, 판사 장석조